

## 28.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9-50호 1999. 1. 29

### 개 정 이 유

주택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절차를 폐지하고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일반주택과 다른 공급기준, 건설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외국인 주택과 노인주택을 신설하여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함.
- 나. 외국인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등에 1인 1구좌씩가입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는 사업주체, 사업비 및 주택규모의 변경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함.
- 라. 현재는 주택건설공사기간중 모든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공사기간중 책임자만 상주하고 토목, 건축, 기타 설비공사의 감리원은 각 공사기간동안만 상주하도록 하여 인력과 경비의 낭비소지를 없애고자 함.